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900-01

어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업무편람

2011. 10.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ONTENTS

I. 어업법인 제도의 개요	1
1. 현행 어업법인 제도의 특징	3
2. 어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5
II. 어업회사법인 설립절차	9
1. 정관의 작성	11
2. 창립총회	13
3. 출자	14
4. 설립등기	14
III. 영어조합법인 일반현황	17
1. 제도도입 배경 및 설립근거	19
2. 영어조합법인 법적 성격	19
3. 조합원 자격, 설립등기	20
4. 주요 사업내용	20
5. 출자범위 및 규모 등	21
6. 준조합원의 자격요건 및 출자	21
7. 세제지원 및 특성	22
8.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의 비교표	23
IV. 영어조합법인 설립절차	25
1. 정관의 작성	27
2. 창립총회	28
3. 출자	29
4. 설립등기	30
5. 현물출자(어장)등의 소유권 이전절차	31
6. 사업실적 보고	33



V. 어업회사법인과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정	35
1. 생산자단체 범위	37
2.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예)	38
3.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예)	46
4.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예)	54
5.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	63
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70
7.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73
VI. 참고자료	93
1. 2008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95
2. 2009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105
3. 2010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115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5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5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2
7. 조세특례제한법(발췌)	146
8.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58
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176
10. 지방세특례제한법(발췌)	179
11. 상업등기법(발췌)	180
1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발췌)	190
1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발췌)	192
14. 「상법」(발췌)	193



I

어업법인 제도의 개요

1. 현행 어업법인 제도의 특징
2. 어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I. 어업법인 제도의 개요

1. 현행 어업법인 제도의 특징

가. 근거법령

- 현행 어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영어조합법인(제16조)과 어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법인 성격

- 동법에서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체”로, 어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어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어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설립 주체

- 기본적으로 어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어업인 출자 : 영어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어업회사법인은 비어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사업 범위

- 영어조합법인 :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어업과 관련된 공동 시설의 설치·운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어업회사법인 :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외에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비교

구분	영어조합법인 (The Fishing union corporation)	어업회사법인 (The Fishing company limited)
관련 규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 요건	○어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어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비어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동법 시행령 제19조)
운영 현황 ('10년)	○ 운영법인 수 : 1,241개 ○ 법인당 조합원 수 : 8.4명 ○ 출자액 10억이상 법인 수 : 25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154백만원 * 출처 : 내부자료	○ 2010년 기준으로 11개소 (통계청 조사)

2 어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 본 어업법인 등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 내용은 업무편의를 위하여 개략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며,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200\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수} \times (\text{사업연도월수}/12))$ * 2012.12.31. 한시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 해당 없음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4항, 제5항) *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토지 등”이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함 (조특법시행령 제64조제4항 및 제5항) * 2012.12.31. 한시적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4항 및 제5항)
배당소득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과세기간별 1,2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 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5/100로 하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2012.12.31. 한시적 (조특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해당없음




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3항) * 2012.12.31. 한시적 	○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11.5.30. 대통령령 제22934호 제7조제2호 관련)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별표6 참조) 	○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붙임 별표 4 참조)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 해당 없음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취득세 면제 및 경감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2.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좌 동
등록면허세 면제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12.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좌 동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2012.12.31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어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 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해당 없음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면제하지 아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2항)	○ 해당 없음



II

어업회사법인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2. 창립총회
3. 출자
4. 설립등기

II. 어업회사법인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가. 정관의 정의

- 정관은 어업회사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 법인의 설립에 관계된 자는 정관에 이를 기재하는 동시에 서명이 요구된다.

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주식회사의 例)

-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① 목적
 - ② 상호
 -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⑥ 본점소재지
 -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시행령 제3조의 2(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 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한 날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이의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상법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관 제반 근거 :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적용, 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상법상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정관 작성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 ◦ 창립총회

가.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주주(주식회사의 예)

나.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① 정관의 변경 또는 승인
- ② 이사와 감사를 선임
- ③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 ④ 설립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다.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 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 등기 시 첨부(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어업회사법인 정관(예) 참조)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 출자

가. 출자의 범위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어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사원(주주)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출자를 불입한 사원(주주)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 등을 기재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 설립등기(주식회사의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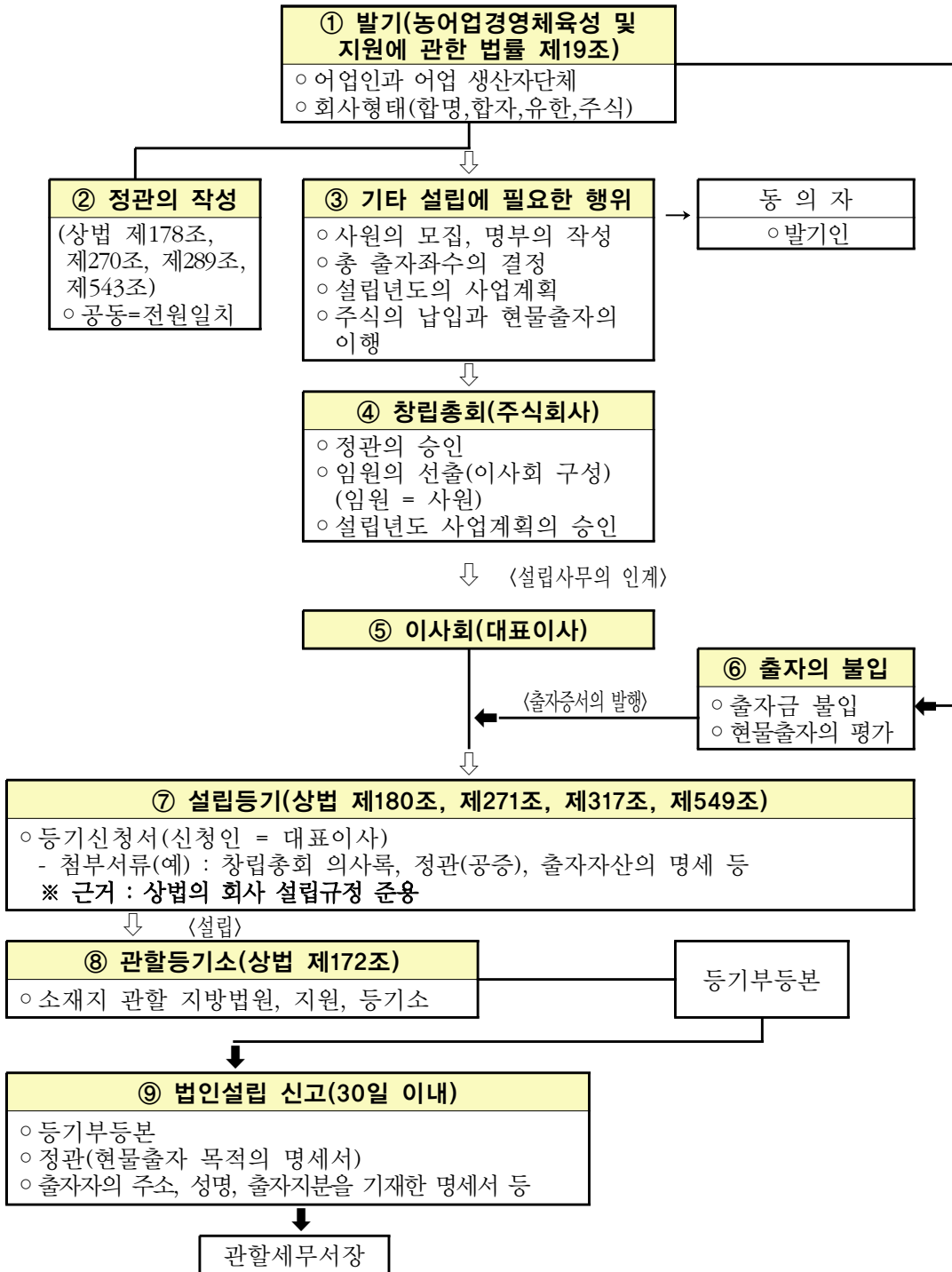
가. 등기 시 필수 기재사항

-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본점의 소재지
 - ⑥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⑦ 자본금의 액
 - ⑧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⑨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⑩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⑪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기타 등기 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함.

나. 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

- ① 정관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③ 주식청약서 ④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⑤ 창립총회의 의사록 등

□ 어업회사법인 설립절차



III

영어조합법인 일반현황

1. 제도도입 배경 및 설립근거
2. 영어조합법인 법적성격
3. 조합원 자격, 설립등기
4. 주요 사업내용
5. 출자범위 및 규모 등
6. 준조합원의 자격요건 및 출자
7. 세제지원 및 특성
8.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의 비교표

Ⅲ. 영어조합법인 일반현황

1. 제도도입 배경 및 설립근거

- WTO-DDA(도하개발 아젠다) 출범과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의한 EEZ선포로 동북아 신어업질서 형성 등 어업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별어업인의 한계를 보완·극복하고 자본·기술의 결합으로 어업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예어업생산자단체 육성 필요성 대두
- 설립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협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 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 가능

2. 영어조합법인 법적 성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영어조합 법인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7항에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음

- 실제로, 수산업법상 영어조합법인은 설립행위 및 권리능력 등에서는 민법상 법인규정과 유사하며, 그 구성원의 성격, 자산의 출자 및 소유형태 등에 있어서는 조합규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성격은 영어조합법인의 도입취지가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어조합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소규모어가를 조합화 하여 자본·기술 집약적인 협업적 어업의 실현으로 어가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

3 ◦ 조합원 자격, 설립등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어업인으로서
- 조합원 자격을 가진 어업인 5인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36호(2011.8.18)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참조
-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증인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조합법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됨

4 ◦ 주요 사업내용

- 개별 소규모 어가를 조합화하여 법인이름으로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판매 및 수출하며 자본·기술 집약적인 어업의 실현으로 상품의 고품질, 균질화를 기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 어촌관광 및 수산물의 유통체제개선과 연계하여 국내수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어가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
-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수산물의 생산을 비롯한 저장·가공·유통·판매 등 사업영역의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수산기업적

복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참여어가의 어업노동력 분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도 높일 수 있음

- 또한, 영어조합법인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생산활동은 물론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의 사업과
- 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 등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5. 출자범위 및 규모 등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 조합원은 반드시 자본을 출자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 기타의 현물 출자시에는 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함

6. 준조합원의 자격요건 및 출자

- 준조합원 제도는 수산업에 관심있는 도시자본 유입을 위한 것으로 영어조합법인에 가입할 수 있는 준조합원의 자격은
 -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 준조합원은 조합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의결권과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음
- 준조합원은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조합법인의 발전, 총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가 있음

7 ◦ 세제지원 및 특성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감면
 - 취득세 면제 및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등 지방세감면
 - ※ 어업법인제도 5쪽에서 7쪽 참조
- 어촌계, 수협 및 영어조합법인은 다수 어업인의 조직체인 점에서 유사하나 성격, 목적, 자격, 업무범위 등에서 상이함
- 어촌계·지구별수협의 한계 및 취약성 보완
 - 어촌계는 마을공동어장이라는 지역성, 다수인(10인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집 및 집행상의 문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연계성 등에서 한계가 있으나, 영어조합법인은 정예화된 어업인 단체로 이와 같은 문제점 극복 가능
 - 지구별수협은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사업의 집중적 수행이 곤란하나, 영어조합법인은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판매 및 수출 등의 전문적·기술 집약적인 협업적 어업의 실현으로 상품의 고품질·균질화를 기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8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의 비교표

구 분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성 격	○협업적 어업경영	○어업인, 수산제조업자의 협동 조직	○일정구역내 어촌계원의 공동사업수행
목 적	○어업규모가 작은 어업인 끼리 어장, 수산시설 등의 자산을 공동출자 하여 협업적 어업경영, 공동 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영어의 능률화와 소득증대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 생산력의 증강 도모	○어촌계 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도모
구성원 자 격	○일반 조합법인 - 어업인 ○협동양식어업 조합법인 - 어촌계 계원 또는 수협 조합원	○지구별 수협 - 지역내 거주하는 어업인 ○업종별 수협 - 특정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수산물 가공수협 - 특정수산제조업 경영자	○어촌계의 구역내에 거주 하는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업 무 구 역	○제한없음	○지구별 수협 - 시·군 ○업종별 수협 - 도 또는 전국 ○수산물 가공수협 - 도 또는 전국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정관에서 정함 (통상 마을 단위)
설립 절차	○5인이상의 어업인 공동 으로 정관을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 정부의 인·허가 없음	○조합원 자격자 20인이상 받기 및 당해 업무구역 내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 과반수(최소한 200인 이상)동의로 설립 신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원 10인이상 받기 및 정관 작성→시장·군수·구청장 인가
의결 기관 및 임원	○총 회 ○이사회	○총 회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장 및 상임이사 ○감 사	○총회 - 계원으로 구성



구 분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대 상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의 경영과 그부대 사업 ○어업에 관련된 공동 시설 설치 또는 운영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 보관, 판매 및 검사 사업 ○신용사업, 이용·제조가공 사업 ○공제, 후생복지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쟁 ○소속 지구별조합에 속하는 어업권의 행사 ○어업인의 생활필수품,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등
상 호 관 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수협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별수협은 어장의 관리 등 어촌계의 구역내의 업무를 지도감독 -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계를 감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수협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
정 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사업의 우선지원 ○수산업법상우선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사업의 우선지원 ○마을어업등 수산업법상 우선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사업의 우선지원 ○마을어업등 수산업법상 우선면허
세 제 지 원	국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출자조합원 양도소득세 면제 및 배당소득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과금의 면제(수협법 제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IV

영어조합법인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2. 창립총회
3. 출자
4. 설립등기
5. 현물출자(어장)등의 소유권 이전절차
6. 사업실적보고

IV. 영어조합법인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 정관 정의

- 영어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합법인 설립시 발기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 (전원 합의작성)

□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농식품부고시 제2011-136호, 2011. 8.18)

- 영어조합법인 설립시 정관작성 준거로 이용
- 정관(예)의 기재내용
 - 절대적 기재사항 : 준수규정 및 내용변경 가능 규정
 - 임의적 기재사항 : 조합원 합의에 따라 규정

□ 정관은 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의 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⑪ 회계년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⑫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⑬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상기이외의 사항(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실정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함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조합원의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영어조합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조합원 명부의 작성 : 설립당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2 ▶ 창립총회

□ 정관,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

□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① 정관의 승인
-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 구성)
[임원(이사)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 ③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④ 설립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창립총회의 의결은 영어조합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함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시에 첨부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3 ◦ 출자

□ 영어조합법인에의 출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출자의 불입

-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토지 또는 어장과 같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함

출자증서의 발행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등을 기재

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조합원 1인의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여야 함

4 ◦ 설립등기

등기신청인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대표이사)

등기신청서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다음의 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등기사항

- ① 명칭
- ② 목적
- ③ 사업
- ④ 사무소의 소재지
-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⑦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 ⑧ 복수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 ①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② 정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③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 ④ 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등기소** : 영어조합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등기소

5 ◦ **현물출자(어장)등의 소유권 이전절차**

조합법인에의 출자

- 조합원은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 가능

- 조합법인이 설립중일 경우에는 창립총회후 설립등기전 출자 -

- ① 출자재산의 평가
조합법인은 출자재산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 ② 현물출자계약
 - 계약당사자 : 조합법인(대표이사)과 출자조합원
 -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③ 계약설립후

○ 출자증서의 발행(영어조합법인)

- 조합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는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을 기재

※ 기재요령

- 어장(양식장) : 어장(양식장)의 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기재
- 어 선 :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년도, 총톤수, 어업의 종류(허가번호)를 기재
- 부 동 산 : 지번, 지목, 면적, 건물구조 등을 기재

○ 출자재산의 양도(출자조합원)

- 출자목적인 재산을 조합법인에 양도하고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증서를 교부받음

□ 출자재산의 소유권이전(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법인설립등기 완료후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 조합법인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 신청서(법무사와 상의 작성)
- 현물출자계약서
- 등기권리증
- 출자조합원(양도자)의 인감증명서(소유권이전용) 및 주민등록등본
- 조합법인(양수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락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② 삭제
-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 **사업실적보고**(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5조)

- 영어조합법인은 매년말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영어조합법인 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3. 10)
-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3. 31)

V

어업회사법인과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정

1. 생산자단체 범위
2.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예)
3.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예)
4.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예)
5.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
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7.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V. 어업회사법인과 영어조합법에 관한 규정

1.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9호, 2011. 2.25, 일부개정]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부 칙 <제2011-19호, 2011. 2.25>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2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예)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37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예)」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예)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37호(2011. 8.18)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어업회사법인○○합명회사라 칭한다.

(註1)

(비고)

상호는 반드시 「어업회사법인○○합명회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어업경영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어업경영과 ○○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2)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1.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에 둔다.(註3)
2.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어업인으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7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 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註4)

1. 금○○○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대 ○○○○㎡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사무실
 건평 1층 ○○㎡
 2층 ○○㎡
 가격 금 ○○○○○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채권 금 〇〇〇〇〇원 단, 〇〇〇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
금 가격 금 〇〇〇〇〇원

성명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
〇〇시도 〇〇시군 〇〇읍면 〇〇리동 〇〇번지

1.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〇〇〇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 〇〇〇원

성명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
〇〇시도 〇〇시군 〇〇읍면 〇〇리동 〇〇번지

1. 신용

평가표준 1년 금 〇〇〇원

성명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
〇〇시도 〇〇시군 〇〇읍면 〇〇리동 〇〇번지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어업인인 경우 ‘어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제9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어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겸업금지)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사원 〇〇〇을(를) 업무집행 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사원 ○○○과(와) 사원○○○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사원 ○○○, 사원 ○○○을(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사원 ○○○을(를)대표사원으로 한다.(註5)

제13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써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 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 망
3. 파 산
4. 금치산
5. 제 명

제20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 [유례] ①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겸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 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받지 못한다.

제5장 계 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로 한다.

제24조(계산 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연도 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6장 해 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〇〇년 간으로 한다(註6)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청 산

제30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註7)

년 월 일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사원 ○ ○ ○ ①

(이하 사원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註1) 합명회사의 商號中에는 “合名會社”라는 文字를 使用해야 하는 點 이외에는 별다른 制限이 없으나 동일한 市·郡內에서 同種 營業을 위하여 他人이 登記한 商號나 어느 會社의 支店이나 出張所 등과 같이 會社의 獨立性이 認定되지 않고 그 일부분임을 표시하는 듯한 商號로는 登記할 수 없음을 留意해야 한다.
- (註2)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면 數個의 事業을 目的으로 해도 無妨하나 그 營業內容을 明確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記載해야 하며 막연히 “物品都賣業” 등과 같이 抽象的으로 記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어업경영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 (註3) 그 所在地番까지 記載하지 않고 最小行政區域까지만 記載해도 無妨하며 支店의 所在地는 그를 設置할 경우에 한하여 記載한다.
- (註4) 社員의 姓名, 住所 그 出資目的과 價格등을 具體的으로 記載해야 한다. 登記의 경우와는 달리 出資의 履行部分은 必要的 記載事項이 아니다. 出資目的이란 出資의 對象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金額에 한하지는 않고 動産, 不動産, 債權, 有價證券등 기타 財産上의 出資는 물론 勞務나 信用등 非財産上의 出資도 無妨하다. 財産上의 出資인 경우에는 그 金額이나 價額도 記載해야 하나 勞務나 信用등 非財産上의 出資인 경우에는 그를 記載할 必要없다.
- (註5) 合名會社의 각 사원은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商200조). 즉 각 사원은 별도로 선임행위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業務執行機關을 구성하고 다른 사원의 業務執行權限은 박탈된다(商201조1항). 또한 定款으로 모든 사원 또는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만 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商202조).
- (註6) 이는 定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註7) 株式會社나 有限會社의 定款과는 달리 公證人의 認證은 받지 않아도 된다.



3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예)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3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예)」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예)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38호(2011. 8.18)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어업회사법인○○합자회사라 칭한다 (註1)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업경영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어업경영과 ○○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2)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에 둔다.(註3)
-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어업인, 수산물의 생산자 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수산물의 생산자 단체 및 비어업인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註4)

제7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 수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원의 성명·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책임과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註5)

- 1.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1.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대 ○○○○m²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貳층 사무실
 건평 1층 ○○m²
 2층 ○○m²
 가격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 채권 금 〇〇〇〇〇원 단, 〇〇〇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
가격 금 〇〇〇〇〇원

유한책임사원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
〇〇시도 〇〇시군 〇〇읍면 〇〇리동 〇〇번지

1.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〇〇〇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 〇〇〇원

무한책임사원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
〇〇시도 〇〇시군 〇〇읍면 〇〇리동 〇〇번지

1. 신용

평가표준 1년 금 〇〇〇원

무한책임사원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
〇〇시도 〇〇시군 〇〇읍면 〇〇리동 〇〇번지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9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어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한책임사원의 겸업의 자유)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11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을(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와) 동 ○○○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 동 ○○○을(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동 ○○○을(를) 대표사원으로 한다.(註6)

제13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를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 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5. 제명

제20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유례] ①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 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

제5장 계 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로 한다.

제24조(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년도 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은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6장 해 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〇〇년으로 한다.(註7)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 소정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청 산

제30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이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 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註8)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 ○ ①

(이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註1) 合資會社의 商號中에는 “合資會社”라는 文字를 使用해야 하는 點 이외에는 別다른 制限이 없으나 同一한 市·郡內에서 同種 營業을 위하여 他人이 登記한 商號나 어느 會社의 支店이나 出張所 등과 같이 會社의 獨立性이 認定되지 않고 그 一部임을 表示하는 듯한 商號로는 登記할 수 없음을 留意해야 한다.
- (註2)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면 數個의 事業을 目的으로 해도 無妨 하나 그 營業內容을 明確히 알 수 있도록 具體적으로 記載해야 하며 明確히 “物品都賣業” 등과 같이 抽象적으로 記載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어업경영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 (註3) 그 所在地番까지 記載하지 않고 最小行政區域까지만 記載해도 無妨하며 支店의 所在地는 그를 設置할 경우에 한하여 記載한다.
- (註4) 수산물의 생산자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註5) 社員의 姓名, 住所 그 出資目的과 價格 및 有限·無限의 責任 등을 記載해야 한다.
 登記의 경우와는 달리 出資의 履行部分은 必要的 記載事項이 아니다. 出資目的이란 出資의 對象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金額에 한하지는 않고 動産, 不動産, 債權, 有價證券등 기타 財産上의 出資는 물론 勞務나 信用등 非財産上의 出資도 無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비재산상의 출자는 할 수 없다.
 財産上의 出資인 경우에는 그 金額이나 價額도 記載해야 하나 勞務나 信用등 非財産上의 出資인 경우에는 그를 記載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 (註6)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 (註7) 이는 定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註8) 株式會社나 有限會社의 定款과는 달리 公證人의 認證은 받지 않아도 된다.



4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예)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3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예)」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예)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39호(2011. 8.18)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라 칭한다(註1)

(비고)

상호는 반드시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부족 등으로 어업경영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어업인, 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註2)

제4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어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3)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제5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에 둔다.(註4)
-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註5)

제6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註6)

제7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註7)

[유례] 본 회사는 ○○특허권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8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만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註8)

[유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주로서 그중 보통주식은 6만주, 우선주식은 2만주, 후배주식은 2만주로 한다.

제○조(우선주식의 내용) 우선주식의 이익 배당률은 연 1할로서 당해 결산기의 이익 배당률이 그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결산기에 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제○조(후배주식의 내용) 후배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연○푼의 이액배당을 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조(의결권 없는 주식)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조(상환주식) 상환주식은 주식발행 후 ○년 이내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상환가액은 1주당 금○○원으로 한다.

제9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註9)

제10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 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만주로 한다.(註10)

제12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제13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로 한 때

제○조 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4조(주식의 양도제한)

-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결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 ② 전항과 관련 비어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제16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1월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분할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21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을 과반수로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 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3조(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註11)

제24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과반수는 어업인으로 한다.

제25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註12)

제26조(임기)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註13)

제27조(보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법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어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지배인의 임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제31조(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 중에는 제19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34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월○일부터 ○월○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35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7장 해 산

제36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7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주주총회의 결의

제37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8조(회사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9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40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청 산

제41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42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유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제○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자

받기인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재산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대 ○○m²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3층 사무소

1층 ○○m²

2층 ○○m²

3층 ○○m²

3. 출자재산의 평가액 : 금○○○원

4. 이에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어업인인 경우 ‘어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어업인’인 경우 ‘비어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44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6조(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제1기 영업년도는 본 회사 설립일로부터 서기 년월일까지로 한다.

제47조(최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본 회사의 최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취임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위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註14)

년 월 일

발기인 ○ ○ ○ ① (주민등록번호)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발기인 ○ ○ ○ ② (주민등록번호)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발기인 ○ ○ ○ ③ (주민등록번호)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발기인 전원 연기명 날인한다.)(註15)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註1) 주식회사의 商號中에는 “株式會社”라는 文字를 使用해야 하는 點 이외에는 別다른 制限이 없으나 同一한 市·郡內에서 同種營業을 위하여 他人이 登記한 商號나 어느 會社의 支店이나 出張所 등과 같이 會社의 獨立性이 認定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商號로는 登記할 수 없음을 留意해야 한다.
- (註2) 수산물생산자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 (註3)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면 數個의 事業을 目的으로 해도 無妨하나 그 營業內容을 明確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記載해야 하며 “物品都賣業”등과 같이 抽象的으로 記載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어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 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 (註4) 그 所在場所의 地番까지 確定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最小行政區域까지만 定해도 無妨하다
- (註5)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이 아니므로 이의 記載與否는 會社의 任意에 屬한다.
- (註6) 公告는 官保나 時事에 관한 日刊新聞에 掲載해야 하므로 週刊誌나 스포츠新聞등에는 掲載할 수 없고 數個의 新聞紙에 동시에 公告하는 것은 無妨하나 “○○新聞 또는 XX新聞”에 掲載하는 것과 같이 數個의 新聞中 選擇的으로 公告한다고 定할 수는 없다.
- (註7) 이 事項은 定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定한 경우에 한하여 定款에 記載한다.
- (註8) 이는 會社가 將來 發行할 수 있는 株式의 最高限度(發行豫定株式)로서 發行株式總數의 4배를 超過할 수 없다.
- (註9) 이는 100원 以上으로서 均일해야 한다.
- (註10) 發行豫定株式의 4분의1 以上이어야 한다.
- (註11) 理事는 3人以上, 監査는 1人以上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의 경우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註12) 代表理事는 數人으로 定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數人의 代表理事가 公同으로 會社를 代表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事項을 반드시 定款에 記載해야 한다.
- (註13) 理事의 任期는 3年, 監査의 任期는 2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 (註14) 株式會社의 定款은 公證人의 認證을 받음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效力이 발생한다.

※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포함)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18조 등의 설립요건(설립목적, 사업범위, 비농업인 출자한 등)을 갖추어 정관변경, 총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선례 : 2004.10.21. 공탁법인 3402-228, 2005.11.15. 공탁법인과-624 질의회답 참조

* 본 질의는 최근 농업부문에 대한 비농업 자본투자 확대 및 관심 증가 등에 따른 질의·응답사례임.

5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4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40호(2011. 8.18)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어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 칭한다.(註1)

(비고)

상호는 반드시 「어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어업경영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어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2)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에 둔다.(註3)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자본의 총액)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만원으로 한다.(註4)

제7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註5)

제2장 사원과 출자

제8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업은 어업인, 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9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 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분의 9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註6)

제11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 2,000좌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2,000좌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000좌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유례]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말미 기재와 같다.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어업인인 경우 ‘어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어업인’인 경우 ‘비어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12조(지분의 양도제한) ①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과 관련 비어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본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5일전까지 회의 일자와 회의 목적·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5조(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6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7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임 원

제18조(임원) 본 회사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이사 중 2인 이상은 어업인이어야 한다.(註7)

제19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0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대표이사)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註8) 단,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2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3조(지배인의 임면) ①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5장 계 산

제24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로부터 ○월 ○일 까지로 한다.

제25조(이익배당) 본 회사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26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 산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 병
4. 파 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29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30조(재산인수) 회사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계산,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2. 재 산 ○ ○ ○ ○ ○ ○
3. 가 격 금 ○ ○ ○ 원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어업인인 경우 ‘어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어업인’인 경우 ‘비어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31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사원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목적 및 재산 ○ ○ ○ ○ ○ ○
3. 출자자산의 가격 금 ○ ○ ○ 원
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좌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어업인인 경우 ‘어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어업인’인 경우 ‘비어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32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어업회사법인○○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註9)

년 월 일

어업회사법인○○유한회사

사원 ○ ○ ○ ⑨

(이하 사원전원이 기명날인)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註1) 有限會社의 商號中에는 “有限會社”라는 文字를 使用해야 하는 點 이외에는 別다른 制限이 없으나 同一한 市·郡內에서 同種營業을 위하여 他人이 登記한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號로는 登記할 수 없음에 留意해야 한다.
- (註2)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면 數個의 事業을 目的으로 해도 無妨하나 그 營業內容을 明確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記載해야 하며 默然히 “物品都賣業” 등과 같이 抽象的으로 記載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어업경영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 (註3) 그 所在場所의 地番까지 確定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最小行政區域까지만 定해도 無妨하다.
그리고 支店은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이 아니므로 이의 記載與否는 會社의 任意에 屬한다.
- (註4) 이는 1,000萬원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 (註5)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定한 경우에 한하여 定款에 記載한다.
- (註6) 1座의 金額은 5,000원 이상으로서 均一해야 한다.
- (註7) 理事는 1인이상 반드시 두어야 하나 監査는 그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必須機關은 아니지만 任意機關으로서 理事會를 두기로 한 때에는 會議體의 性質上 理事의 數는 3인이어야 할 것이다.
- (註8) 代表理事는 數人으로 定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數人이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하도록 정한 때에는 定款에 記載해야 한다.
- (註9) 社員의 總數는 法院의 許可를 받지 않고는 50인을 超過할 수 없고 이 定款은 公證人의 認證을 받음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效力이 발생한다.

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2011. 9.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법인의 설립통지)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정관 1부
2. 조합원명부 1부
3.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출자자산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적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각 시·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2011. 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3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 정관(예)」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 45호(1997. 5.12)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36호(2011. 8.1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비 고)

명칭 중에는 반드시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 고)

조합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수산업법 제9조의2 제1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도) ○○



(시·군) ○○(구·읍·면) ○○(동·리)에 둔다.

(비 고)

별도의 (분)사무소를 두는 조합법인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을 {본 조합법인의 주된(주)사무소는}으로 고치고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 조합법인의 분사무소는 ○○(시·도) ○○(시·군) ○○(구·읍·면) ○○(동·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어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4. 어업작업의 대행
5.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비 고)

1. 각 사업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어업의 경영 : 조합법인이 직접 수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함.
- 나.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조합법인의 어업경영에 부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외의 자의 어업에 협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다. 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합법인이 공동 경영을 위하여 어선, 창고, 양식장, 냉동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라.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 조합법인이 어선, 어업 기계, 어구, 건조시설 등을 보유하여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대여·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마. 어업작업의 대행 : 조합법인이 조합원 이외의 자로부터 어업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 활동을 말함.

바.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 조합법인의 조합원(혹은 조합 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판매 하거나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경제 활동을 말함.

2.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한 사업이외의 사업도 제2조의 목적과 부합 되는 것을 적절히 열거할 수 있다.

예) 6. 낚시유어사업

제5조(광고방법) ① 본 조합법인의 광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7조(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연간 6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만 〇〇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출자할 수 있는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현금 기타의 현물을 소유한 자

(비 고)

1. 제1호의 경우는 조합법인의 실정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2. 제2호의 〇〇은 20세이상으로 하되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제3호의 경우 조합법인이 출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만을 기재한다.

제8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 또는 가공하는 자
(비 고)

준조합원의 자격은 제1호 및 제2호 중에서 조합법인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제9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3. 경영규모(어장면적, 어선 등) 및 연중 어업종사일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 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 허용 여부를 이 조에서 특별히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 기입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 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 제1항 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비 고)

1.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의 비율에 따라 가지도록 정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 준조합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10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 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4호 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의무사항을 적절히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을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른 조합원 및 제8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 망
3. 파 산 (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 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조합원의 경우는 총회의 결의, 준조합원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13조(제명)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비 고)

제명의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제4호부터 추가하여 열거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제14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현금이나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기타 현물(부동산, 차량 등)로 할 수 있다.

- ②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등 현물(이하 “현물 출자물”이라 한다)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따라 환가한다.
- ③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 ④ 조합원은 〇〇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〇〇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본 조합법인에 현물 출자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현물 출자물 및 그 평가액과 현물 출자물에 따른 출자좌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 ⑥ 현물 출자물은 이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제15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즉시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어장(양식장)의 경우에는 어장(양식장)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말하며,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연도, 총톤수, 어업종류(허가번호)를 말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 고)

출자증서의 발행은 출자지분에 대한 세금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출자재산의 표시, 특히 토지의 경우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 출자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소액 출자자에게 증좌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 말에 증좌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비 고)

법정적립금으로 출자총액의 2배를 적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를 {출자총액의 2배에 달할 때까지}로 수정한다.

제18조(사업 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 확장 및 다음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〇〇을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비 고)

〇〇은 10이상 50이내에서 정한다.

제19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얻어지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따른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감자에 따른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0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19조에 따른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18조에 따른 사업 준비금(이하 “사업 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1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 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 고)

1. 제2호의 사업 준비금 배분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 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22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조합법인의 지분취득 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24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 금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 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5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할 수 있다.

② 환불할 재산 가운데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등이 조합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대되었거나,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는 자료부터 징수한다.

- 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과 상계할 수 있다.
-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26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환불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

제4장 회 계

제27조(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성격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로 정하는 등 회계연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8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비 고)

제1호의 경우 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비 고)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의 정기적 게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를 『매월』, 『분기마다』 등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가 부수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자하는 조합법인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제31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연도 말 결산 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2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3조(수익배분 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 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4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발생된 매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18조에 따른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배당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비 고)



제2항의 배당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5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 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법정 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한다.

제5장 임 원

제36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 사 ○인
3. 감 사 ○인
4. 총 무 ○인
5. 부 장 ○인

(비 고)

1. 조합법인의 조합원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임원의 명칭과 그 정 수를 정한다.
2. 제5호의 부장을 임원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영어부장, 구매부장, 판매부장, 가공부장 등으로 명기한다.

제37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39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준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6.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비 고)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 후 보관한다.

제41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장은 대표이사와 총무를 보좌하며 각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비 고)

제5항의 경우 각부의 업무관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책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비 고)

제4항의 경우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비 고)

임원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감사와 감사 이외의 임원 임기는 다르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의 운영

제47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4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

(비 고)

조합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열거한다.



제5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3조에 따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
5.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

③ 제1항의 총회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51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5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한다.

제7장 해 산

제54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비 고)

조합원의 해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제55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登記하여야 한다.

(비 고)

조합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청산재산의 정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 및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 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 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18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가입 신청서(제9조 제1항 관련)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소					
	영어종사경력	년	수산업종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영어경영규모					
출자내역	출자재산의 표시 :		평가액 :		천원	
	현금	(계좌천원)	총 출자수	(계좌천원)		
<p>○○ 영어조합법인 정관 제9조에 따라 귀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영어조합법인 대표 귀하</p> <p>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증명 또는 평가 자료 1부. 3. 준조합원 자격 해당 증명자료(준조합원인 경우) 1부.</p>						
<p>기재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종은 신청자가 종사한 업종을 기재 ○ 출자재산의 표시는 어장(양식장)의 경우 어장(양식장)의 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말하며,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연도, 총톤수, 어업종류(허가번호)를 말하며,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조합원 (준조합원) 명부 (제9조제3항 관련)

(단위: 계좌,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자좌수	출자금액
(조합원)				
(준조합원)				



[별지 제3호 서식]

**현물출자물을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현물출자물
및 그 평가액과 현물출자물에 따른 출자좌수**(제14조 제5항 관련)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현물출자물의 표시				평가액 (천원)	출자좌수
	어장종류 (양식장)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 치	면 적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년도)	총 톤 수	어업종류 (허가번호)		
	부동산명	지 번	지 목	면 적		

VI

참고자료

1. 2008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2. 2009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3. 2010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조세특례제한법(발췌)
8.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10. 지방세특례제한법(발췌)
11. 상업등기법(발췌)
1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발췌)
1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발췌)
14. 「상법」 (발췌)

VI. 참고자료

1. 2008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가. 사업체수

영어조합법인은 총 1,151개로 전년대비 7.0% 증가

- 영어조합법인 중 '08년도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390개로 34%임
- 사업형태는 양식(41%), 복합(30%: 양식·가공·유통), 기타(12%), 가공(9%) 순

(단위 : 개)

연도	법인수 (계)	양식	가공	유통	어선	복 합					기 타
						소계	양식· 가공	가공· 유통	양식· 유통	양식· 가공· 유통	
2007	1,076	488	75	54	36	365	50	91	77	146	60
2008	1,151	471	100	74	25	344	67	115	55	107	137
증 감	75	△17	25	20	△11	△21	17	24	△22	△39	77
증감률 (%)	7.0	△3.5	33.3	37.0	△30.6	△5.8	34.0	26.4	△28.6	△26.7	128.3

나. 종사자수

영어조합법인당 종사자수는 평균 9.5명으로 전년(8.1명)보다 17% 증가

- 2008년말 현재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10,985명으로 전년에 비해 25.6% 증가하였으며, 법인당 종사자수는 9.5명으로 전년 보다 1.4명 많아졌음



□ 종사자 규모별 어업법인 사업체를 보면, 『10인이하』 88.5%, 『11~15인』 4.1%, 『31인이상』 4.0%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명, 개)

연도	법인 수 (계)	5~10	11~15	16~20	21~25	26~30	31 이상	조합원총수 (준조합)	평 균 조합원수
2007	1,076	968	39	17	13	7	29	8,746 (209)	8.1
2008	1,151	1,019	47	17	16	6	46	10,985 (2,689)	9.5
증 감	175	51	8	0	3	△1	17	2,239	1.4
증감률 (%)	7.0	5.3	20.5	0	23.1	△14.3	58.6	25.6	17.3

다.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1) 출자금

영어조합법인당 출자금은 평균 3.91억원으로 전년보다 7.1% 감소

□ 출자금은 총 4,503억 9천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였음

○ 법인당 출자금은 3.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백만원 감소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법인 수 (계)	출자금 규모별 법인 수						총 출자액	법인당 평균출자액
		50미만	50~ 100	100~ 200	200~ 500	500~ 1,000	1,000 이상		
2007	1,076	288	294	280	149	47	17	450,586.70	418.76
2008	1,151	479	235	236	142	39	20	450,389.92	391.30
증 감	175	191	△59	△44	△7	△8	3	△196.78	△27.46
증감률 (%)	7.0	66.3	△20.1	△15.7	△4.7	△17.0	17.6	△0.04	△6.6

(2) 정부지원금

영어조합법인당 정부보조금은 1.53억원, 정부융자금은 1.38억원

- 2008년 말까지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300개로 전년에 비해 31.0% 증가
-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1.53억원
- 법인당 정부보조금은 전년에 비해 7.0% 증가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법인 수 (계)	지원 법인 수	법인 당 지원금	지원금 합 계	정부 보조금				융자금
					계	법인당	국 비	지방비	
2007까지	1,076	229	275	63,173.3	32,742.3	143	17,211.2	15,531.1	30,431.0
2008까지	1,151	300	293	87,884.2	45,946.8	153	24,749.5	21,197.3	41,397.5
2008증가	175	71	348	24,710.9	13,204.5	186	7,538.3	5,666.2	10,966.5
증가율(%)	7.0	31.0	6.5	39.1	40.3	7.0	43.8	36.5	36.0

라. 사업실적

결산법인 중 흑자법인이 334개소로 전년대비 18.9% 증가

- 영어조합법인 총 1,151개 중 결산법인은 390개(34%)이며, 이 중 흑자법인이 334개소로 결산법인의 86%임

(단위 : 개)

연도	법인 수 (계)	결산법인			
		계	흑 자	적 자	수지평균
2007	1,076	343	281	56	6
2008	1,151	390	334	47	9
증 감	175	47	53	△9	3
증가율(%)	7.0	13.7	18.9	16.1	50.0



□ 결산법인 당 연간 매출액은 6억 7천만원, 손익은 9천 3백만원

연도	법인수 (결산법인)	조합원수 (준조합원)	출자액 (평균)	생 산		경영실적		
				수량(톤)	금액	총수입	총지출	손익
2008	1,151 (390)	8,296 (2,689)	450,390.00 (21,494.50)	733,038.80	261,951.90	280,208.10	225,801.10	36,589.90

통 계 표

1. 업종별 · 지역별 현황

- 시도별 : 전남(46%), 전북(12%), 충남(11%), 경남(8%) 순
- 사업별 : 양식(41%), 복합(30% : 양식·가공·유통), 기타(12%),
가공(9%) 순

(단위 : 개소)

시·군별	계	양식	가공	유통	어선	복 합					기 타
						소계	양식· 가공	가공· 유통	양식· 유통	양식· 가공· 유통	
합 계	1,151	471	100	74	25	344	67	115	55	107	137
부 산	15	2	-	2	-	9	-	7	1	1	2
인 천	47	-	-	-	-	40	-	6	6	28	7
경 기	63	35	-	6	4	13	-	7	2	4	5
강 원	31	13	3	1	-	11	1	7	1	2	3
충 북	11	3	-	-	2	6	-	2	4	-	-
충 남	131	27	14	22	6	55	18	19	3	14	7
경 북	10	1	6	-	1	2	-	1	-	1	-
경 남	93	32	12	3	4	28	14	9	3	2	4
전 북	135	39	4	10	3	78	16	40	8	14	1
전 남	527	257	51	20	5	99	18	16	26	39	95
제 주	88	62	10	10	-	3	-	1	-	2	3



2. 법인당 조합원 수

- 전국평균 조합원 수 : 9.5명(전국 조합원 수 10,985명 ÷ 1,151개소)
- 시·도별 : 경북(20.6명), 부산(19.1명), 경기(15.9명), 충북(14.3명) 순

(단위 : 명, 개)

시군별	계	5~10	11~15	16~20	21~25	26~30	31 이상	조합원총수 (준조합)	평 균 조합원수
합 계	1,151	1,019	47	17	16	6	46	10,985(2,689)	9.5
부 산	15	10	2	1	-	-	2	287(21)	19.1
인 천	47	37	4	2	-	-	4	430(149)	9.1
경 기	63	42	9	3	3	2	4	1,004(49)	15.9
강 원	31	22	3	1	3	-	2	332(22)	10.7
충 북	11	6	2	-	1	-	2	157(19)	14.3
충 남	131	119	2	-	4	3	3	687(31)	5.2
경 북	10	5	-	1	-	1	3	206(12)	20.6
경 남	93	84	2	2	1	-	4	698(129)	7.5
전 북	135	120	7	4	2	-	2	983(44)	7.3
전 남	527	489	15	2	2	-	19	5,771(2,184)	10.9
제 주	88	85	1	1	-	-	1	430(29)	4.9

3. 수입 및 출자

● 법인당 출자액 : 부산(20,130백만원), 전북(167백만원), 전남(157백만원) 순

※ 전국평균 출자액 : 법인당 / 391백만원

(단위 : 개, 명, 백만원)

시·군	법인수 (결산 법인)	조합원수 (준조합원)	출자액 (평균)	생 산		경영실적		
				수량(톤)	금액	총수입	총지출	손익
합 계	1,151 (390)	8,296 (2,689)	450,390.00 (21,494.50)	733,038.80	261,951.90	280,208.10	225,801.10	36,589.90
부 산	15 (10)	266 (21)	302,086.70 (20,139.10)	4,194.00	2,891.80	3,868.30	3,013.50	854.80
인 천	47 (12)	281 (149)	2,713.40 (57.70)	48.00	1,376.20	1,683.00	998.50	684.40
경 기	63 (28)	955 (49)	5,513.30 (87.50)	8,686.65	17,360.20	17,392.20	14,113.40	3,268.80
강 원	31 (9)	310 (22)	11,771.20 (379.70)	8,067.90	5,159.00	4,673.30	4,323.00	350.30
충 북	11 (2)	138 (19)	984.10 (89.50)	76.00	1,800.00	1,800.00	800.00	1,000.00
충 남	131 (29)	656 (31)	33,180.90 (253.30)	19,974.62	27,794.10	24,263.00	22,523.50	1,671.40
경 북	10 (7)	194 (12)	99.90 (10.00)	15,887.00	1,640.50	1,689.40	1,441.40	238.90
경 남	93 (20)	569 (129)	6,748.70 (72.60)	3,537.10	7,818.50	59,693.30	42,489.70	1,986.30
전 북	135 (18)	939 (44)	24,298.20 (180.00)	302,007.00	23,394.30	27,516.70	24,497.90	3,018.80
전 남	527 (200)	3,587 (2,184)	51,840.80 (98.40)	105,629.53	138,331.40	102,971.90	80,279.60	20,274.60
제 주	88 (55)	401 (29)	11,152.80 (126.70)	264,931.00	34,385.90	34,657.00	31,320.60	3,250.60



4. 사업실적

- 전체 1,151법인 중 결산법인이 390개소(34%), 미결산법인이 761개소(66%)
- 결산법인 중 흑자법인이 334개소(86%), 적자법인 47개소(12%)로 나타남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 계	1,151	15	47	63	31	11	131	10	93	135	527	88	
결산 방법	소 계	390	10	12	28	9	2	29	7	20	18	200	55
	흑 자	334	8	6	25	7	2	25	6	13	14	186	42
	적 자	47	2	6	3	1	-	3	1	7	2	11	12
	수지평균	9	-	-	-	1	-	1	-	-	2	3	1
미결산 법인	761	5	35	35	22	9	102	3	73	117	327	33	

※ 미결산 사유 : 사업준비 또는 사업초기로 경영수지 분석불가, 시·군·구 취합시점 미도래

5. 정부지원 현황

- 전체법인 1,151개소 중 71개소(6%)가 247억원 정부지원 수혜자임
- 제주 78억원(32%), 충남 45억원(13%), 제주 56억원(9%), 경기 34억원(5%) 순

(단위 : 백만원)

시·군	지 원 법인수	합 계	보 조 금			용 자 금
			계	국 비	지 방 비	
합 계	71	24,710.9	13,204.5	7,538.3	5,666.2	10,966.5
부 산	3	2,660.0	860.0	420.0	440.0	1,800.0
인 천	5	556.1	306.1	-	306.1	250.0
경 기	12	716.5	666.5	373.0	293.5	50.0
강 원	3	1,599.0	1,299.0	1,069.0	230.0	300.0
충 북	1	160.0	160.0	100	60	-
충 남	7	4,553.5	4,101.8	2,007.4	2,094.4	451.8
경 북	3	336.8	336.8	150.0	186.8	-
경 남	4	1,410.0	1,210.0	900.0	310.0	200.0
전 북	2	1,138.0	907.0	757.0	150.0	231.0
전 남	19	3,217.5	1,846.5	854.9	991.6	1,371.0
제 주	12	7,823.5	1,510.8	907.0	603.8	6,312.7



【 주요 항목별 법인당 지표(2007년 기준) 】

(단위 : 개, 명, 백만원)

주요 항목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사업체수 (운영중인 법인)	4,624	896	490
종 사 자 수	10.9	8.1	7.7
정 부 보 조 금	293.8	329.6	202.6
정 부 용 자 금	626.5	486.9	352.1
출 자 금	404.0	250.9	201.6
판 매 액	1,813.0	1,079.0	657.0
자 산	2,521	1,345	1,035
부 채	1,775	858	680
자 본	746	488	355
매 출 액	2,905	1,532	933
영 업 이 익	19	29	40
당 기 순 이 익	△5	34	27

※ 출처 : 2007년 농어업 법인사업체 통계조사(통계청)

2 2009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가. 사업체수

영어조합법인은 총 1,215개로 전년대비 5.6% 증가

- 영어조합법인 중 '09년도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401개로 33%임
- 사업형태는 양식(43%), 복합(34% : 양식·가공·유통), 가공(8%), 기타(6.5) 순

(단위 : 개)

연도	법인수 (계)	양식	가공	유통	어선	복 합					기 타
						소계	양식 가공	가공 유통	양식 유통	양식 가공 유통	
2008	1,151	471	100	74	25	344	67	115	55	107	137
2009	1,215	519	98	67	40	411	59	117	78	157	80
증 감	64	48	△2	△7	15	67	△8	2	23	50	△57
증감률(%)	5.6	10.2	△2	△10.4	60	19.5	△11.9	1.7	41.8	46.7	△41.6

나. 종사자수

영어조합법인당 종사자수는 평균 8.3명으로 전년(9.5명)보다 12.6% 감소

- 2009년말 현재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10,026명으로 전년에 비해 8.7% 감소하였으며, 법인당 종사자수는 8.3명으로 전년 보다 1.2명 감소했음
- 종사자 규모별 어업법인 사업체를 보면, 『10인이하』 89.6%, 『11~15인』 4%, 『31인이상』 2.6%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명, 개)

연도	법인 수 (계)	5~10	11~15	16~20	21~25	26~30	31 이상	조합원총수 (준조합)	평 균 조합원수
2008	1,151	1,019	47	17	16	6	46	10,985 (2,689)	9.5
2009	1,215	1,089	49	19	20	7	31	10,026 (2,071)	8.3
증 감	64	70	2	2	4	1	△15	△959	△1.2
증감률(%)	5.6	6.9	4.3	11.8	25	16.7	△32.6	△8.7	△12.6

다.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1) 출자금

영어조합법인당 출자금은 평균 1.5억원으로 전년보다 61.7% 감소

□ 출자금은 총 1,81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685억원 감소하였음

○ 법인당 출자금은 1.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억원 감소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법인 수 (계)	출자금 규모별 법인 수						총 출자액	법인당 평균출자액
		50미만	50~ 100	100~ 200	200~ 500	500~ 1,000	1,000 이상		
2008	1,151	479	235	236	142	39	20	450,389.92	391.30
2009	1,215	337	404	240	155	50	29	181,927.3	149.7
증 감	64	△142	169	4	13	11	9	△268,462.62	△241.6
증감률 (%)	5.6	△29.6	71.9	1.69	9.2	28.2	45	△59.6	△61.7

(2) 정부지원금

영어조합법인당 정부보조금은 1.71억원, 정부융자금은 0.7억원

- 2009년도에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77개로 전년에 비해 74.3% 감소
- 법인당 정부보조금 지원금은 1.71억원(7,007.1백만원/41)
- 법인당 정부보조금(융자금 제외)은 전년에 비해 84.7% 감소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법인 수 (계)	지원 법인 수	법인 당 지원금	지원금 합 계	정부 보조금			융자금
					계	국 비	지방비	
2008	1,151	300	293	87,884.2	45,946.8	24,749.5	21,197.3	41,397.5
2009	1,215	77	133.7	10,275.1	7,007.1	4,010	2,997.1	3,268
증 감	64	△223	△159.3	△77,609.1	△38,939.7	△20,739.5	△18,200.2	△38,129.5
증가율(%)	5.6	△74.3	△54.4	△88.3	△84.7	△83.8	△85.9	92.1

* 보조금 41 (인천4, 경기2, 강원1, 충북1, 충남1, 전북7, 경북3, 경남16, 제주6)

* 융자금 47 (인천3, 전북1, 전남3, 경남9, 제주31)



라. 사업실적

결산법인 중 흑자법인이 331개소로 전년대비 0.9% 감소

- 영어조합법인 총 1,215개 중 결산법인은 401개(33%)이며, 이 중 흑자법인이 331개소로 결산법인의 82.5%임

(단위 : 개)

연도	법인 수 (계)	결산법인			
		계	흑자	적자	수지평균
2007	1,076	343	281	56	6
2008	1,151	390	334	47	9
2009	1,215	401	331	34	36
증감	64	11	△3	△13	27
증가율(%)	5.6	2.8	△0.9	△27.7	300

- 결산법인 당 연간 매출액은 7억 4천만원(총생산금액/401개소), 손익은 1억 7백만원(손익 42,970/401개소)

(단위 : 백만원)

연도	법인수 (결산법인)	조합원수 (준조합원)	출자액 (평균)	생산		경영실적		
				수량(톤)	금액	총수입	총지출	손익
2008	1,151 (390)	8,296 (2,689)	450,390.00 (21,494.50)	733,038.80	261,951.90	280,208.10	225,801.10	36,589.90
2009	1,215 (401)	10,026 (2,071)	181,927.3 (149.7)	499,256	295,948	288,582	243,747	42,970

통 계 표

1. 업종별 · 지역별 현황

- 시도별 : 전남(47%), 전북(12%), 충남(11%), 경남(7%) 순
- 사업별 : 양식(43%), 복합(34% : 양식·가공·유통), 가공(8%) 순

(단위 : 개소)

사도	합계	양식	가공	유통	어선	복 합					기타
						소계	양식 가공	가공 유통	양식 유통	양식 가공 유통	
합 계	1,215	519	98	67	40	411	59	117	78	157	80
부 산	14	1	0	0	0	12	0	10	1	1	1
인 천	50	7	0	1	0	41	3	2	0	36	2
경 기	64	34	2	7	3	14	0	6	2	6	4
강 원	38	14	2	1	2	16	1	8	3	4	3
충 북	14	4	0	0	3	7	0	3	4	0	0
충 남	138	26	8	17	10	26	6	10	1	9	51
전 북	141	19	22	4	6	89	16	21	24	28	0
전 남	580	328	34	20	12	175	30	47	31	67	11
경 북	10	1	6		1	2	0	1	0	1	0
경 남	82	27	13	6	3	27	3	9	12	3	6
제 주	84	58	11	11	0	2	0	0	0	2	2



2. 법인당 출자규모

- 전국평균 출자액 : 150백만원(전국 총 출자액 181,927백만원 ÷ 1,215개소)
- 시·도별 평균출자액 : 전남(2,554백만원), 제주(207백만원), 부산(198백만원) 순

(단위 : 개, 백만원)

시군별	계	50 미만	50~100	100~200	200~500	500~1,000	1,000 이상	총출자액	법인당 평균출자액
부 산	14	5	3	2	3	0	1	2,766	198
인 천	50	24	24	2	0	0	0	1,871	37.4
경 기	64	38	15	3	5	1	2	5,714	89.3
강 원	38	17	12	3	2	3	1	5,084	133.8
충 북	14	10	3	1	0	0	0	820	58.6
충 남	138	48	57	17	9	5	2	12,382	89.7
경 북	10	9	1	0	0	0	0	100	10
경 남	82	32	15	18	9	3	5	8,899	108.5
전 북	141	15	36	47	35	5	3	25,828.3	183.2
전 남	580	126	206	130	82	25	11	101,104	2,554
제 주	84	13	32	17	10	8	4	17,359	206.7
합 계	1,215	337	404	240	155	50	29	181,927.3	149.7

3. 법인당 조합원 수

- 전국평균 조합원 수 : 8.3명(전국 조합원 수 10,026명 ÷ 1,215개소)
- 시·도별 평균 : 경북(19.4명), 경기(15.4명), 부산(14.8명), 충북(11.6명) 순

(단위 : 명, 개)

시군별	계	5~10	11~15	16~20	21~25	26~30	31 이상	조합원총수 (준조합)	평균 조합원수
합 계	1,215	1,089	49	19	20	7	31	10,026(2,071)	8.3
부 산	14	9	2	1	0	0	2	207(20)	14.8
인 천	50	48	1	1	0	0	0	306(35)	6.1
경 기	64	44	7	3	4	3	3	986(30)	15.4
강 원	38	27	4	2	4	0	1	376(13)	9.9
충 북	14	10	3	1	0	0	0	162(0)	11.6
충 남	138	119	2	0	5	3	9	1,262(57)	9.1
경 북	10	5	0	2	0	0	3	194(12)	19.4
경 남	82	68	9	1	1	0	3	921(145)	11.2
전 북	141	128	6	4	1	1	1	965(110)	6.8
전 남	580	551	14	2	5	0	8	4,117(1,632)	7.1
제 주	84	80	1	2	0	0	1	530(17)	6.3



4. 수입 및 출자

- 법인당 출자액 : 충북(820,100백만원), 전남(101,104백만원), 전북(25,975백만원) 순

※ 전국 평균 출자액 : 법인당 / 62,189백만원

(단위 : 개, 명, 백만원)

사군	법인수 (결산법인)	조합원수 (준조합원)	출자액 (평균)	생 산		경영실적		
				수량 (톤)	금액	총수입	총지출	손익
합 계	1,215(427)	10,026(2,071)	1,001,207(62,189)	499,256	295,948	288,582	243,747	42,970
부 산	14(9)	207(20)	2,766(198)	1,309.4	3,301	4,214	3,644	570
인 천	50(14)	306(35)	1,871(37.4)	1,376.8	1,369	1,889	1,244	645
경 기	64(23)	986(30)	5,714(89.3)	8,667	18,563	14,964	11,874	3,090
강 원	38(18)	376(13)	5,084	1,405.4	6,947	7,021	7,444	-423
충 북	14(3)	162(11.6)	820,100(58,579)	90	2,240	2,240	1,005	1,235
충 남	138(29)	1,256(59)	12,382(89.7)	19,223	37,991	37,991	33,254	4,737
경 북	10(6)	194(12)	100(10)	15,887	1,641	1,689	1,441	239
경 남	82(37)	921(145)	8,899(108.5)	1,484	5,557	10,455	9,387	1,063
전 북	141(13)	965(110)	25,975(184)	1,857	25,868	19,556	17,261	2,294
전 남	580(196)	4,116(1,632)	101,104(174)	442,601	150,180	145,207	118,410	24,947
제 주	84(79)	530(17)	17,359(206.7)	5,355	42,291	43,356	38,783	4,573

5. 사업실적

- 전체 1,215법인 중 결산법인이 401개소(33%), 미결산법인이 814개소(67%)
- 결산법인 중 흑자법인이 331개소(83), 적자법인 34개소(8.5%)로 나타남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 계	1,215	14	50	64	38	14	138	10	82	141	580	84	
결산 방법	소 계	401	9	14	23	18	3	30	6	37	19	196	46
	흑 자	331	6	11	20	11	3	29	5	17	18	173	38
	적 자	34	2	3	3	6	0	1	1	2	1	9	6
	수지평균	36	1	0	0	1	0	0	0	18	0	14	2
미결산 법인	814	5	36	41	20	11	108	4	45	122	384	38	



6. 정부지원 현황

- 전체법인 1,215개소 중 77개소(6%)가 103억원 정부지원 수혜자임
- 전남 49억원(48%), 전북 21억원(21%), 제주 15억원(15%) 순

(단위 : 백만원)

사군	지 원 법인수	합 계	보 조 금			용 자 금
			계	국 비	지 방 비	
합 계	77	10,275.1	7,007.1	4,010	2,997.1	3,268
부 산	0	0	0	0	0	0
인 천	4	461	394	0	394	67
경 기	2	411.7	411.7	0	411.7	0
강 원	1	200	200	0	200	0
충 북	1	112	112	70	42	0
충 남	1	150	150	0	150	0
경 북	3	337	337	150	187	0
경 남	16	24	15	10	5	9
전 북	7	2,164	1,964	1,420	544	200
전 남	11	4,886.4	3,416.4	2,360	1,056.4	1,450
제 주	31	1,549	7	0	7	1,542

3 2010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가. 사업체수

영어조합법인은 총 1,241개로 전년대비 2.1% 증가

- 영어조합법인 중 '10년도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418개로 33.7%임
- 사업형태는 양식(41%), 복합(30% : 양식·가공·유통), 기타(12%), 가공(9%), 순

(단위 : 개)

연도	법인수 (계)	양식	가공	유통	어선	복 합					기 타
						소계	양식· 가공	가공· 유통	양식· 유통	양식· 가공· 유통	
2009	1,215	519	98	67	40	411	59	117	78	157	80
2010	1,241	498	114	114	84	380	40	103	90	147	125
증 감	26	△21	16	47	44	△31	△19	△14	12	△10	45
증감률(%)	2.1	△4	16.3	70.1	110	△7.5	△32.2	△12	15.4	△6.4	56.3

나. 종사자수

영어조합법인당 종사자수는 평균 8.4명으로 전년(8.3명)보다 1.2% 증가

- 2010년말 현재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10,474명으로 전년에 비해 4.5% 증가하였으며, 법인당 종사자수는 8.4명으로 전년 보다 0.1명 증가했음
- 종사자 규모별 어업법인 사업체를 보면, 『10인이하』 89.4%, 『11~15인』 3.8%, 『31인이상』 2.8%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명, 개)

연도	법인 수 (계)	5~10	11~15	16~20	21~25	26~30	31 이상	조합원총수 (준조합)	평균 조합원수
2009	1,215	1,089	49	19	20	7	31	10,026(2,071)	8.3
2010	1,241	1,110	47	20	21	8	35	10,474(2,721)	8.4
증 감	26	21	△2	1	1	1	4	448(650)	0.1
증감률(%)	2.1	0.5	△4.1	5.3	5	14.3	12.9	4.5(31.4)	1.2

다.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1) 출자금

영어조합법인당 출자금은 평균 1.5억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

□ 출자금은 총 1,91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6억원 증가하였음

○ 법인당 출자금은 1.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43억원 증가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법인 수 (계)	출자금 규모별 법인 수						총 출자액	법인당 평균출자액
		50미만	50~ 100	100~ 200	200~ 500	500~ 1,000	1,000 이상		
2009	1,215	337	404	240	155	50	29	181,927.3	149.7
2010	1,241	309	338	307	201	61	25	191,562.5	154
증 감	26	△28	△66	67	46	11	△4	9,635.2	4.3
증감률(%)	2.1	△8.3	16.3	27.9	29.7	22	△13.8	5.3	2.9

(2) 정부지원금

영어조합법인당 정부보조금은 3.15억원, 정부용자금은 1.14억원

- 2010년도에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62개소로 전년에 비해 19.5% 감소
- 법인당 정부보조금액은 3.45억원(21,373백만원/62)
- 법인당 정부보조금은 전년에 비해 157.8% 증가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법인 수 (계)	지원 법인 수	법인 당 지원금	지원금 합 계	정부 보조금			용자금
					계	국 비	지방비	
2009	1,215	77	133.7	10,275.1	7,007.1	4,010	2,997.1	3,268
2010	1,241	62	344.7	21,373	17,942	10,153	7,789	3,431
증감	26	△15	211	11,097.9	10,934.9	6,143	4,791.9	163
증가율(%)	2.1	△19.5	157.8	108	156	153	160	5

* 보조금 57(부산1, 인천2, 경기7, 강원1, 충북4, 전북1, 전남25, 경북5, 경남6, 제주5)

* 용자금 30(경기1, 강원3, 전북1, 전남7, 경북3, 제주15)



라. 사업실적

결산법인 중 흑자법인이 331개소로 전년대비 0.9% 감소

□ 영어조합법인 총 1,241개 중 결산법인은 418개(34%)이며, 이 중 흑자법인이 336개소로 결산법인의 80.4%임

(단위 : 개)

연도	법인 수 (계)	결산법인			
		계	흑 자	적 자	수지평균
2009	1,215	401	331	34	36
2010	1,241	418	336	42	40
증 감	26	17	5	8	4
증가율(%)	2.1	4.23	1.5	23.5	11.1

□ 결산법인 당 연간 매출액은 7억 6천만원(총생산금액/418개소), 손익은 1억 4천만원(손익 58,288/418개소)

(단위 : 백만원)

연 도	법인수 (결산법인)	조합원수 (준조합원)	출자액 (평균)	생 산		경영실적		
				수량(톤)	금액	총수입	총지출	손익
2009	1,215 (401)	10,026 (2,071)	181,927.3 (149.7)	499,256	295,948	288,582	243,747	42,970
2010	1,241 (418)	10,474 (2,757)	191,562.5 (154)	213,331	319,050.8	324,961	268,533.4	58,288

통 계 표

1. 업종별 · 지역별 현황

- 시도별 : 전남(46%), 충남(11%), 전북(12%), 경남(8%) 순
- 사업별 : 양식(41%), 복합(30% : 양식·가공·유통), 기타(12%), 가공(9%) 순

(단위 : 개소)

사도	합계	양식	가공	유통	어선	복 합				기타
						양식·가공	가공·유통	양식·유통	양식·가공·유통	
부 산	15	3	0	1	0	0	7	2	1	1
인 천	54	7	0	1	0	0	5	0	40	1
울 산	1	0	0	0	0	0	0	0	1	0
경 기	63	35	2	7	1	0	5	2	7	4
강 원	34	14	2	1	4	1	6	2	4	0
충 북	16	2	0	1	5	0	0	4	2	2
충 남	160	34	11	20	8	9	22	9	9	38
경 북	18	2	5	0	2	1	4	0	4	0
경 남	81	26	13	5	4	3	9	12	3	6
전 북	139	16	22	4	6	15	23	24	28	1
전 남	580	304	49	33	10	11	22	35	46	70
제 주	80	55	10	11	0	0	0	0	2	2
합 계	1,241	498	114	84	40	40	103	90	147	125



2. 법인당 출자규모

- 전국평균 출자액 : 154(총출자액 191,562.5백만원 ÷ 1,241개소)
- 시도별 : 제주(214.8), 전북(194), 충남(193), 전남(152백만원) 순

(단위 : 개, 백만원)

시군별	계	50 미만	50~ 100	100~ 200	200~ 500	500~ 1,000	1,000 이상	총출자액	법인당 평균출자액
부 산	15	5	3	3	2	1	1	2,723	181.5
인 천	54	27	23	2	0	2	0	2,861.6	52.9
울 산	1	1	0	0	0	0	0	10	10
경 기	63	39	16	1	5	0	2	5,093.8	80.9
강 원	34	16	10	3	1	3	1	4,737.1	139
충 북	16	8	5	2	1	0	0	1,097.5	68.6
충 남	160	67	44	23	12	9	5	30,935	193
경 북	18	7	7	3	1	0	0	1,352	75
경 남	81	36	15	17	10	2	1	10,597.5	130.8
전 북	139	11	44	39	37	5	3	26,947	194
전 남	580	81	141	197	122	31	8	88,021	152
제 주	80	11	30	17	10	8	4	17,187	214.8
합 계	1,241	309	338	307	201	61	25	191,562.5	154

3. 법인당 조합원 수

- 전국평균 조합원 수 : 8.4명(전국 조합원 수 10,474명 ÷ 1,241개소)
- 시·도별 : 경북(20.7명), 경기(15.9명), 부산(13.9명), 충북(11.1명) 순

(단위 : 명, 개)

시군별	계	5~10	11~15	16~20	21~25	26~30	31 이상	조합원총수 (준조합)	평균 조합원수
부 산	15	11	2	0	0	0	2	208(19)	13.9
인 천	54	52	2	0	0	0	0	314(36)	5.8
울 산	1	1	0	0	0	0	0	5(0)	5
경 기	63	46	6	2	3	2	4	1,003(59)	15.9
강 원	34	27	2	0	4	0	1	309(0)	9
충 북	16	10	2	1	2	0	1	178(3)	11.1
충 남	160	136	5	1	5	3	10	1,577(81)	9.9
경 북	18	10	0	2	1	2	3	373(12)	20.7
경 남	81	66	8	2	1	0	4	881(161)	10.9
전 북	139	126	6	4	1	1	1	956(73)	6.9
전 남	580	549	13	6	4	0	8	4,154(2,296)	7.2
제 주	80	76	1	2	0	0	1	516(17)	6.5
합 계	1,241	1,110	47	20	21	8	35	10,474(2,757)	8.4



4. 수입 및 출자

● 법인당 출자액 : 전남(88,021백만원), 충남(30,935백만원), 경남(10,597.5백만원) 순

※ 전국평균 출자액 : 법인당 / 154백만원

(단위 : 개, 명, 백만원)

사군	법인수 (결산법인)	조합원수 (준조합원)	출자액 (평균)	생 산		경영실적		
				수량 (톤)	금액	총수입	총지출	손익
합 계	1,241(413)	10,474(2,757)	191,562.5(154)	213,331	319,050.8	324,961	268,533.4	58,288
부 산	15(9)	208(19)	2,723(181.5)	1,218	3,633.5	3,672	3,217	455
인 천	54(10)	314(36)	2,861.6(52.9)	72	1,084	1,893	1,564	383
울 산	1(0)	5(0)	10(10)	0	0	0	0	0
경 기	63(22)	1,003(59)	5,093.8(80.9)	54,643.2	14,201	14,667	13,324	1,342
강 원	34(34)	309(0)	4,737.1(139)	394.7	3,540	3,347	4,215	△754
충 북	16(8)	178(3)	1,097.5(68.6)	84.1	1,040	1,178	770.2	407.8
충 남	160(29)	1,577(81)	30,935(193)	20,053	29,682	31,888	28,779	4,903
경 북	18(10)	373(12)	1,352(75)	7,796	2,245	2,215	2,362	△247
경 남	81(40)	881(161)	10,597.5(130.8)	16,008	14,865.3	14,726	14,026.2	699.2
전 북	139(14)	956(73)	26,947(194)	2,907	25,120	27,369	24,574	2,795
전 남	580(194)	4,154(2,296)	88,021(152)	101,261	168,329	168,695	127,634	41,061
제 주	80(43)	516(17)	17,187(214.8)	8,894	55,311	55,311	48,068	7,243

5. 사업실적

- 전체 1,241개 법인 중 결산법인이 418개소(34%), 미결산법인이 823개소(66%)
- 결산법인 중 흑자법인이 336개소(80.4%), 적자법인 42개소(10%)로 나타남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 계	1,241	15	54	1	63	34	16	160	18	81	139	580	80	
결산 방법	소 계	418	9	10	0	22	34	8	29	15	40	14	194	43
	흑 자	336	7	4	0	12	10	6	28	7	21	14	193	34
	적 자	42	1	4	0	10	7	1	1	2	8	0	1	7
	수지평균	40	1	2	0	0	17	1	0	6	11	176	0	2
미결산 법인	823	6	44	1	41	0	8	131	3	41	125	386	37	



6. 정부지원 현황

- 전체법인 1,241개소 중 62개소(5%)가 213억원 정부지원 수혜자임.
- 전남 114억원(53%), 제주 52억원(24%), 경남 16억원(8%), 경북 16억원(8%) 순

(단위 : 백만원)

사군	지 원 법인수	합 계	보 조 금			용 자 금
			계	국 비	지 방 비	
합 계	62	21,373	17,942	10,153	7,789	3,431
부 산	1	7	7	7	0	0
인 천	2	235	235	0	235	0
울 산	0	0	0	0	0	0
경 기	6	112	112	0	112	0
강 원	1	150	150	0	150	0
충 북	4	433	433	342	91	0
충 남	0	0	0	0	0	0
경 북	7	1,643	1,543	803	740	100
경 남	4	1,654	1,654	1,103	551	0
전 북	2	549	349	300	49	200
전 남	25	11,370	8,239	4,998	3,241	3,131
제 주	10	5,220	5,220	2,600	2,620	0

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48호, 2011. 3. 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시행일 : 2011.9.10]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1.3.9>

1. 농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2. 어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1.9.10] 제4조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변경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중개할 수 있다.

제4장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12조(직접지불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에서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1.9.10] 제12조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로 한다. <개정 2011.3.9>

②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시행일 : 2011.9.10] 제13조

제14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1.9.10] 제14조

제15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1.9.10] 제15조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④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合名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合資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벌 칙

제31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5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 8,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과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중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경영 형태 또는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제1호 중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또는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품목별 생산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1. 농업소득: 농업경영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합한 소득
2. 기준소득: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5년 동안의 농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소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 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의 해당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농업경영체에 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를 말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의 점수(품목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어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6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협동양식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어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6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12. 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0호, 2009.12. 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제3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2. 농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3. 어업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4. 어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이하 “등록통지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조원의 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증표)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른 보조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45세 미만일 것
 2. 영농·영어경력: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



(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정기간
2. 약정조건 및 농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 사유, 요건에서 벗어난 정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회수한다.

제11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13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교육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정보
4.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5.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발췌)

조세특례제한법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지식경제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5. 삭제 <1999.12.28>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 및 제1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 무연탄

2. 삭제 <2001.12.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3.12.30>

7. 삭제 <2000.12.29>

8. 삭제 <2000.12.29>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③ 삭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삭제 <2001.12.29>

2. 삭제 <2001.12.29>

3. 삭제 <2001.12.29>

4. 삭제 <2001.12.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 <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 <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삭제 <2001.12.29>
 13. 삭제 <2001.12.29>
 14. 삭제 <2001.12.29>
 15. 삭제 <2003.12.30>
 16.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18. 삭제 <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와 제2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0.12.27>
- [제목개정 2010.1.1]
- [시행일 : 2011.10.22] 제1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12)}

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0.2.18>

④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⑥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⑦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8.2.29>

⑧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청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5.4, 2010.11.2>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2000.12.29>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육탕업 및 예식장업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 3. 부동산임대업
-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5. 수상오락서비스업
-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 및 자동차견인업

⑨ 삭제 <2000.12.29>

⑩ 삭제 <2000.12.29>

⑪ 삭제 <2000.12.29>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2000.12.29>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세례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4. 월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뮤코다당증 II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⑩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8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4호, 2011. 5.3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2.18, 2010.12.30>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4>
- 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7.10.31, 2009.2.4, 2009.10.8, 2010.2.18>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

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⑤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산업”은 “어업”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제목개정 2010.2.18.]

제3조(영세울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1

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별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4조(영세울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제3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삭제 <2007.2.28>
- ② 삭제 <2007.2.28>
 [제목개정 2010.2.18]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전문개정 2010.2.18]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농·어민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확인서
 -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정) ①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② 법 제10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제목개정 2010.2.18]

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



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0.2.18]

제12조(환급중단 추정세액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①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농·임·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

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마.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목개정 2010.2.18]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2.22]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임업기계·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민은 2년마다 농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되,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규격·사용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 가. 농민
 -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



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전문개정 2008.2.22]

제17조(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12.30>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팩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제1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④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08.2.22>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8.2.22>
3.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 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⑥농·어민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 및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6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중 제5항제4호의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제18조 삭제 <2008.2.22>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 기준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에 대하여는 각각 농림수산물 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 식품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영림·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8.2.22>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 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②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영림·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6.30, 2008.2.22>

④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⑤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⑥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⑦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⑧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⑨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⑩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12.30, 2008.2.22, 2008.2.29.>

제20조의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본조신설 2008.2.22]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①법 제106조의2제9항·제11항·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08.2.22>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



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2.28]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 제1항제1호·제2호(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22.]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2.22.]

제24조(구분경리)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농·임·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19>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전문개정 2008.2.22]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2>

[별표 4] <개정 2009.2.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제3조제7항관련)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와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18. 어선용 레이더
19. 위성항법장치
20.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21. 어군탐지기
22. 어선용 냉동기
23. 어망감시기



24. 샤클(Shackle)
25. 코스(Course)
26. 삭제 <2003.12.30>
27. 전개판
28. 물돛(Sea Anchor)
29. 양식용수차
30. 김양식용유기산
31. 팜사
32. 진주양식용핵
33. 양식용양수기
34.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35. 패각분쇄기
36. 삭제 <2003.12.30>
37. 어선용 호중
38. 삭제 <2003.12.30>
39. 어선용 기적
40. 어선용 수온계

[별표 6] <개정 2010.12.30>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9. 구멍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에 한한다)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8. 수산물 선별기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1. 3.21] [기획재정부령 제191호, 2011.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농민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설작물재배업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0]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 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7.3.29>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염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 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4.24, 2011.3.21>

②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및 임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8.4.24, 2011.3.21>

[제목개정 2002.12.31]

제7조의2 삭제 <2008.4.24>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4.24]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4.24]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10 ◦ 지방세특례제한법(발취)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1 • 상업등기법(발취)

제3조(관할 등기소 및 사무위임 등) ① 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5조(등기부)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과 같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밖으로 옮겨서는 아니 된다.

제6조(등기사무의 처리 등) ① 등기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부속서류의 이동금지) 등기부의 부속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밖으로 옮겨서는 아니 된다.

제8조(등기부의 손상과 그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멸실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준용한다.

제10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등)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교부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으로 본다.

제11조(인감증명) ① 제24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카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준용한다.

제12조(전자증명서 발급) 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제11조제1항의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수수료)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폐쇄한 날부터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는 폐쇄한 등기기록에 준용한다.

제15조(해산회사의 등기기록의 폐쇄)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회사의 등기기록은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③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등기의 신청) ① 등기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의 신청은 서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 및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제2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9조(등기신청서 등) ①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의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등기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4. 등기할 사항
 5.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6.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7. 등기신청수수료액
 8. 신청연월일
 9. 등기소의 표시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⑤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사람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인감의 제출) ①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촉탁에 따른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5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의 정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등기관은 신청서나 그 밖의 서면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1〉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24조에 따른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30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假登記)

- 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사건이 제38조제3항·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때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8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과 첨부서면)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7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서면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본점이전등기 신청의 처리) ①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58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②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 5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제2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 ④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의 신청서를 통지받아 제58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8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60조(본점의 신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61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① 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3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62조제1항의 등기신청이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62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의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62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제2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제6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4조(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① 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이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원의 입·퇴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해산의 등기) ①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청산인에 관한 등기) 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의 청산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종결의 등기) ①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임의청산 종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회사계속의 등기) ① 회사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회사계속의 등기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70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익을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제71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70조 각 호의 서면
3.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72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과 제69조제1항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은 본점소재지에

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제72조제3항의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연월일과 제72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제2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제7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74조(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7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류)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인한 변경 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
3.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7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절차 등) ①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인한 변경 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변경 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12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발췌)

[시행 2011. 3. 9] [법률 제10449호, 2011.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13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발췌)

[시행 2009. 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염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14 ◦ 「상법」 (발췌)

[시행 2010.11.15] [법률 제10281호, 2010. 5.14, 일부개정]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69조 (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4.15] 제170조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때
-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장 합명회사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시행일 : 2012.4.15] 제180조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제기한 사항외에 각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외에 각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71조(등기사항) ①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자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무한책임사원만을 등기하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4.15] 제271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4]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시행일 : 2012.4.15] 제289조

② 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기재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기재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 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시행일 : 2012.4.15] 제317조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시행일 : 2012.4.15] 제543조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계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시행일 : 2012.4.15] 제549조



어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업무편람

발행일 | 2011년 10월 일

발행 | 농림수산식품부

제작·편집 | 수산개발과장 서장우
수산개발과 김병욱, 김도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인쇄 | 문중기획
전화 : 02) 529-8100